대학평의원회규정

 2007.
 6. 23 제정
 2008.
 3. 17 개정

 2008.
 12. 26 개정
 2016.
 3. 9 개정

 2017.
 4. 12 개정
 2018.
 2. 8 개정

 2020.
 10. 16 개정
 2020.
 12. 18 개정

 2021.
 1. 27 개정
 2023.
 2. 6 개정

 2024.
 3. 6 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덕성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9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(적용범위) 전조에 의한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 3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.
 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(2008.3.17)
 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(2008.3.17)
 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(2008.3.17)
 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2008.3.17)
 - 6.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(2008.3.17)
 -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(2008.3.17)

제 2 장 조직

제 4조(구성 및 위촉)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

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21.1.27.>

- 1. 교원 5인
- 2. 직원 2인
- 3. 조교 1인<신설 2021.1.27.>
- 4. 학생 2인 <개정 2021.1.27.>
- 5. 동문 1인 <개정 2021.1.27.>
- 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<개정 2021.1.27.>
- ② 평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
 - 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
 - 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
 - 3.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<신설 2021.1.27.>
 - 4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<개정 2021.1.27.>
 - 5.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<개정 2021.1.27.>
 - 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1.27.>
- 제 5조(자격) ①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임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
 - 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정규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
 - 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<개정 2023.2.6.>
 - 4. 동문 및 외부인사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 과 경륜을 갖춘 자
 - ② 교원,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21.1.27>
 - 1. 휴직 및 퇴직
 - 2. 징계에 의한 직위 해제
 - 3. 3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및 연구년 교원
 - 4. 처장으로 임명된 교원<신설 2017.4.12>
 -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 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휴학 및 졸업
 - 2. 학칙에 의한 정학이상의 징계 처분
 - 3. 교환학생 파견, 현장실습 수업 참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내에서의 학업이 수가 불가능한 경우
- 제 5조의 2(평의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(친인척 등)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·간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

- 3.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② 평의원에게 공정한 심리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의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기피의 결정을 한다.
- ③ 평의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3.6.]

- 제 6조(임원 및 직무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- 제 7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2008.12.26)
 -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(2008.12.26)
 -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별로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구성단위별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의

- 제 8조(회의 소집 및 운영)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2회 개최한다.<개정 2020.10.16.>
 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20.10.16.>
 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-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3.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- ③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5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평의원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20.10.16.>
 - ④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0.10.16.>
 - ⑤ 제3항의 통지 사항 중,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에 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20.10.16.>
- 제 9조(회의록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

2018.2.8.>

- ②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보존하고 이를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2.8., 개정 2020.12.18.>
-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신설 2018.2.8.>
 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신설 2018.2.8>
 - 2.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2018.2.8.>
 - 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<2018.2.8.>
- ④ 전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2.8.>
- 제10조(간사) ①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9>
 - ②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- 제11조(비밀유지) 평의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임원추천

- 제12조(추천위원회 구성) ① 정관 제20조의 3(추천위원회) 규정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.(2008.3.17)
 -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2008.3.17)
 - 1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
 - 2. 초 · 중 ·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 - 3.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
 -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(2008.3.17)
 -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2008.3.17)
- 제13조(임원 추천) ① 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의 2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(2008.3.17)
- ② 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감사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중 1인을 단수 추천한다.(2008.3.17)
- ③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

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추천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.(2008.3.17)

제14조 (2008.3.17)

제15조 (2008.3.17)

제 5 장 보칙

- 제16조(내규)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- 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4. 12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적용례)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 임명된 교원 평의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8. 2. 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10. 1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(제8조)

부 칙<2020. 12. 18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제9조)

부 칙<2021. 1. 27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제4조, 제5조)

부 칙<2023. 2. 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)

부 칙<2024. 3. 6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의2)